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 조사 등 제도 개선 필요
-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 삭제 권고 및 공표 등을 위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개정('25.12.2.)
 - 안전성 조사 절차,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필요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업무의 적시 대응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위탁 규정 개선 필요

3.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유통 중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를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준을 정함 (시행령안 제1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제공·조치 등에 관한 사항**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보관,
조사결과 조치 방법 등에 대해 명시 (시행령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3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및 공표, 조치의 결과보고,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절차 및 공표 방법,
조치 결과보고 방법 등에 대해 명시 (시행령안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8조, 제11조)

라. 어린이제품등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제공요청 관련 사항
안전사고 관련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업무 의뢰 가능 기관
및 요청 가능한 정보 명시 (시행령안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국
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명시 (시행령안 제18조제1항)

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업무 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면제 업무 관련 권한 등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등에게 위탁 명시(시행령안 제18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이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5.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조 국가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명

6.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의3(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2조의4(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를 따른다.

② 법 제6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를 “(안전성조사·직

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모델명”을 “모델명(상표, 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연락처”를 “연락처 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판매페이지 주소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성조사”를 “안전성조사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모델명”을 “모델명(상표, 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락처”를 “연락처 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판매 페이지 주소,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의 판매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삭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8조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제6조의4(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결과보고)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고사항
2. 삭제등의 내용과 실적
3. 삭제등을 이행하지 못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수거등·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법 제9조의2제1항 제2호 및 법 제1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을 “사업자,”로, “사업자가”를 “사업자 또는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로, “수거등의 권고·명령”을 “수거등·삭제등의 권고·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을 “(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3의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3의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8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8의3.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기관에”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 접수”를 “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을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을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을 각각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로 한다.

3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1.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u> <u>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u> <u>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u>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① ----- ----- ----- ----- -----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이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4.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

5.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
성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
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상표·모델명(상표·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
다) 및 제품사진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조 국가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명

6.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

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

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의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

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의3(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

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

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2조의4(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신 설>

<신 설>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를 따른다.

② 법 제6의2제2항에 따라 국가 기술표준원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성조사 ·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

--.

1. 해당 <u>어린이제품</u> 의 제품명, 상표, <u>모델명</u> 및 제품 사진	1. --- <u>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u> ----- --- <u>모델명(상표, 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u>어린이제품</u> 의 제조 국가	3. --- <u>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u> ----- --
4.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u>연락처</u>	4. ----- <u>연락처 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판매페이지 주소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5. <u>안전성조사</u> 결과의 내용	5. <u>안전성조사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u>법 제9조제2항</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 <u>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2항</u> ----- ----- ----- ----- -----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생략)
<신설>

--.

1. ---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모델명(상표, 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
연락처 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판매 페이지 주소,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의 제품명·상표·모델명
(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품사진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 해당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의
판매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
(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
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삭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3(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9
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란 제8조 각 호의 결함을 말한
다.
- 제6조의4(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결과보
고)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말한다.</u> <u>1. 삭제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고사항</u> <u>2. 삭제등의 내용과 실적</u> <u>3. 삭제등을 이행하지 못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계획</u> <u>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u> <u>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수거등·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u>법 제10조제1항제3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u>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법 제10조제1항제3호</u>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u>법 제11조제1항</u> 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u>사업자 또는</u>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 ----- -- <u>사업자,</u> ----- -----

가진 사업자가 권고 또는 명령
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
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의 권고
· 명령 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
고 ·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즉
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
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
라 공표를 하였을 때에는 공표
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
품의 조사 ·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
체에 시험 · 분석 업무를 의뢰할

--- 사업자 또는 삭제등을 권
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 수거등 · 삭제
등의 권고 · 명령 -----

-----.

② -----
----- 수거등 또는
삭제등-----

----- 법 제9
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
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
공 요청 등) ① -----
----- 어린이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
품(이하 “어린이제품등”이라 한
다) -----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2.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3.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4.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

-----.

----- 사업

자 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

1. (현행과 같음)

2. -----

어린이제품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어린이제품등 -----

-----.

1. 어린이제품등-----

2. 어린이제품등-----

3. 어린이제품등-----

4. 어린이제품등-----

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 -----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u>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u> 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5. ----- <u>어린이제품등</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u>어린이제품</u>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하 다)	4. ----- ----- <u>어린이제품등</u>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임·위탁) ① 산업통상 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 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위임·위탁)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u>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u>

<신 설>

<신 설>

4. ~ 8. (생 략)

<신 설>

<신 설>

9. ~ 30.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 2. (생 략)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접 수

<신 설>

4. · 5. (생 략)

3의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3의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4. ~ 8. (현행과 같음)

8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8의3.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9. ~ 30. (현행과 같음)

② -----

----- 안
전인증기관의 장에게 -----
-----.

1. · 2. (현행과 같음)

3. -----

-----에 관
한 업무

3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4. · 5.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3.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4.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③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
-----.

1. ----- 따른

-----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2. ----- 따른

-----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3. ----- 따른

-----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4. -----

-----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에 관한

5. (생략)	<u>업무</u>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 락 처	(043) 870 - 5457